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244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 10. 18.자 합의해제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E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3. 10. 18. 접수 제2151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8. 1. 10. 접수 제765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3차전1362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22,677,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 10. 접수 제76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23. 10. 18.자 합의해제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23. 10. 18. 접수 제21511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해제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피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제약정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연체된 이용대금도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해제약정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제약정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D은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G카드 이용대금채무 등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제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별지